

2018 LBEST 주거래협력회사 모집 공고

○ 등록제 실시 목적

우수한 협력회사를 당사의 파트너사로 등록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Creative를 제공
 공정하고 투명한 등록과 운영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

○ 등록 공지 일정 : 1월 4일(목) ~ 2월 4일(일)

○ 등록 공지 매체 : LBEST 홈페이지, PMS(제작관리시스템), 알라딘 게시판

○ 접수 방법

1. 등록부문

부 문	세부업종
ATL(5)	TVC프로덕션 / POST프로덕션 / 녹음실 / 디자인프로덕션 / 모델에이전시
Digital(2)	인터랙티브 (디지털캠페인, 소셜미디어 제작 및 운영, 바이럴캠페인 운영) / 바이럴영상

2. 접수방법: 당사 지정 e-mail 통한 온라인 지원 (lbestpartner@lbest.com)

부 문	지원서류	해당업종
기존, 신규 업체	①등록신청서 ②17년도 제작 한 대표작품(프로젝트) - ATL 3건 이내 - ATL(바이럴영상 업종 포함) : 기획 및 제작 방향, 스토리보드, 프로젝트 참여 인원, 견적서(요약본), 유사 프로젝트(최근2년), 동영상 파일(선택) ③회사소개서 ④사업자등록증사본 ⑤재무제표(2년) ⑥법인등기부등본 1부(개인사업자 : 대표자 주민등록등본) ⑦고객구성표, 조직도 및 인원현황 ⑧포트폴리오 1부(최근2년) ⑨17년 제작실적(타사포함) ⑩자격증 및 면허증(필요시) ⑪신용평가 결과보고서(한국기업데이터 * 해당업종 한 함)	ATL : TVC프로덕션, POST프로덕션 녹음실, 디자인프로덕션 DIGITAL : 인터랙티브, 바이럴영상 * 대표작품 표준 양식 없음 (프로젝트 당 10장 이내) * 모델에이전시 평가는 별도 진행
공 통	기업신용평가 결과서 제출(미제출시 지원 불가) : 해당업종에 한함 (한국기업데이터_기업신용인증서(KCR-2) 제출 : 신용등급 : B 이상 Pass	ATL : TVC프로덕션 DIGITAL : 인터랙티브, 디지털영상

※ 유의 사항 :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미실시

3. 접수일 : 신규업체 - 1월 22일(월) ~ 2월 4일(일)

기존업체 - 1월 4일(목) ~ 1월 19일(금)

4. 결과공지 : 2월 28일(수) 예정

5. 문의처 : LB경영지원팀 탁찬호 책임(02-3475-8886, chtark@lbest.com)

2018 LBEST 주거래협력회사 모집 공고

○ 접수시 유의사항

- 지원시 지원 희망 업종은 복수 지원불가하며, 지원분야 잘 모를 경우 사전에 문의
- 기존 등록 협력사도 신규와 동일하게 제출서류 해당 기일내 반드시 접수
- 광고상수상은 17년도 실적에 해당하며, 성실히 기입할 것(평가 반영 함)
- POST프로덕션은 ATL, BTL영역 구분 없음
- 대표 작품 및 프로젝트는 17년도 제작에 한정하며, 필요시 제출 동영상 파일은 총100MB 이하로 제한
- 제출서류는 합본하지 말고 별도 파일로 구분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제출
- 재무제표는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서에 신설법인으로 표기
- 모델에이전시 업종은 등록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회사소개서 제출

○ 선정 기준

구분	세부내용	기존업체	신규업체	비고
Creative 평가	• Creative 및 Producing 내부 심사위원단의 평가	60	60	
역량평가	• BCR평가결과 (당사 크리에이티브 평가제) 경쟁PT참여 횟수 / 승률 광고상수상실적	30	10	*신규업체 광고상수상실적 부문 적용
경영평가	• 신용인증서 B등급 이상	10	10	신용등급 B등급 이상 (미제출시 지원불가) *해당업종에 한 함
가점 및 감점	• 가점 : 우수(유공)협력회사 포상 • 감점 : 안전사고, 품질사고, 윤리사고, 보안사고, 저작권법위반	±3	-	

○ 등록취소기준

구분	세부내역
수급사업자 귀책사유	•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주처 • 사회 통념상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고객과 우리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업체 • 품질, 안전, 보안, 윤리사고로 등록취소기로 결정된 회사 또는 동 사유로 고객 또는 발주부서로부터 연간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회사
정상적인 경영 불가	• 부도, 휴업, 폐업 등 / 타사업자 등으로 우회 계약 및 지급 요청
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 위반	• 2차 하도급회사에 대한 고의적인 지불불량 회사 / 담합, 덤핑 등 하도급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회사
계약 위반	• 건적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배하여 당사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등록협력회사 •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의 당사의 요구에 대한 delivery 미준수 /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(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다른 업무를 이유 등)
정도 경영	• 당사의 규정이나 정도경영실천서약을 위반하여 당사의 정당한 구매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객과 우리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끼친 업체
영업 방해	• 당사가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중요한 정보를 경쟁사 또는 고객에게 유출하여 당사의 영업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업체
기타	• 특수관계인 정보 고의 누락